



‘법무사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법무사법 개정과 협회 내부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곧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통해 차기 집행부가 새로운 집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글은 지난 『법무사저널』 3, 4월호의 특집 좌담회에 참석하여 법무사제도와 협회운영의 개혁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피력했던 김민수 법무사가 당시 지면상의 한계로 실리지 못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그간의 논의들이 종합적으로 잘 녹아 있어 차기 집행부의 정책 입안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편집부>

김민수 ■ 법무사(경남) ·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I. 들어가며

「법무사법」은 1996년 12월12일, 법률 제5180호 전문 개정 이후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법무사제도를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법무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소액소송 대리권을 비롯하여, 입법진행 과정에 있는 성년후견인제도, 채권·동산양도 등기제도 등 이미 알려져 있는 제도의 개선을 제외하고도 현행 법무사제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그동안 법무사업계의 제도적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서, 그 개선점을 「법무사법」을 포함

한 제도적 개선과 법무사협회 내부의 개혁 방향으로 나누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우리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법무사들이 우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

II. 「법무사법」 등 제도적 개선

1. 「법무사법」 2조 ‘업무 규정’, 종합적 기술로 개선

「법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업무규정 형식을 종래 한 가지씩 나열하는 소위 ‘나열식’에서 탈피하여 이를 일부 종합적으로 기술, 정리함으로써 다른 자격사법의

업무 규정 형식과 형평을 기하고 시대에 맞게 좀 더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기술 형식을 빌려 다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현행 규정 형식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제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개선된 규정 형식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검찰청에 신청, 청구 또는 제출(위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업무 및 다른 기관의 등록업무를 포함한다) 하는 서류의 작성
2.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제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4. 제1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비고

나열식으로 기술된 업무 규정 형식을 일부 종합식으로 변경함.

2. 사무소의 대형화·조직화·전문화로의 구조 개선

「법무사법」 상의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외에 법무사 조합,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 사무소를 제도화하여 소속 법무사들의 연대책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사무소에서 합동 또는 법인형태의 사무소

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며, 글로벌 시대와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사무소의 대형화·조직화·전문화를 이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사무소에서 합동·법인으로 유도하고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법무사 개인사무소와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사무소간에 집합사건 수임의 제한 규정을 뚫으로써(감정평가사제도 참조) 업계의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각 개인사무소 위주의 과당경쟁 체계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무소 300세대 한도, 합동사무소 500세대 한도, 법무사법인 500세대 초과분 등).

또한, 현재의 합동사무소는 법무사 3인 이상, 법무사 법인은 법무사 5인 이상으로 하되 10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을 설치하는 데 과도한 요건이다. 위 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합동사무소는 법무사 2인 이상, 법무사법인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일정 경력자 요건은 폐지하는 쪽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다른 자격사제도 참조).

3. 규제 완화 및 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정비

「법무사법」의 체계는 어찌 보면 법무사의 권리신장보다는 자격사의 규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시대와 형편에 걸맞지 않고, 다른 자격사와 비교해 유난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각종 규제들은 철폐되어야 한다.

1) 법무사 보수제도의 완전자율화

현행 보수체계는 종래 법무사들의 여망에 의해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고, 전문 자격사 중 유독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에게만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 보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사 보수의 상한규정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하한규정은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어 실효된 상태다.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보수체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완전자율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또한, 가압류 등 상당한 연구노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노력에 의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무 분야는 '성공보수제'로 하여 법무사들이 복잡한 소송문서도 기피하지 않고 위임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법령으로 강제된 '사건부'의 폐지

사건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에 전혀 생경한 장부제도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만 유독 강제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의 일환인 '사건부' 비치제도도 이제는 규제철폐와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폐지해야 할 시점에 왔다.

3) 업무 감독제도의 개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은 고유 업무 처리에 민원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기관의 관여를 받으며, 법무사들과 같이 정기적·비정기적 감독권을 발동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는 법무사의 업무 감독(검열)이 조금은 탄력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앞으로 더욱 다른 자격사와 형평에 맞추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법무사도 그 업무처리 중에 민원야기 등 감독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만 법원 또는 협회에서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4) 직인제도의 '사인 날인제'로의 변경

지금까지 법무사는 사각형의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서명날인 할 때 사각형 직인을 찍었던 유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판결문의 법관 인장 날인제도, 법원·검찰 조서의 판사·검사·참여관 인장 날인제도, 다른 자격사들의 사인 날인제도(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사 등)를 감안해 볼 때, 법무사들도 등기신청 등의 대리인 관에 사인을 날인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옳으며, 구시대

적 유습인 사각형 직인 날인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5) 사무원 정원규제의 폐지

변호사업계도 법무사와 유사하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근래에 철폐되었다. 국가 전문자격사 중에서 유일하게 사무원 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자격사는 이제 법무사뿐이다. 사무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에는 정책적 방안으로 이 제도를 존치하였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등기신청제도나 업계 회원들이 요구하는 법인사무소의 전국적 분사무소 개설 요구 등을 볼 때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규정이 되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법무사 사무소가 예외 없이 소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무원의 부족 현상을 유발하여 사무원의 독주에 법무사가 종속되는 이상한 업계 풍토를 유발하기도 함으로써 법무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경매입찰 대리 사건 수임 등).

6) 법무사 수입의 법원 보고제도의 폐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다른 자격사제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제도다. 자유업종인 법무사들의 수입 보고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며, 다른 자격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변호사를 비롯해 어느 다른 자격사가 감독기관에 수입을 보고하는 제도가 존재하는가? 법원에서 법무사들의 수입실태를 정책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협회에 협조요청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면 될 일이다. 사법당국의 편의에 따라 연례적으로 보고를 강제하는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법무사들의 수입보고는 협회로 한정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7) 사무원 채용·해임의 법원 보고제도 폐지

이 제도 역시도 자영업자인 다른 자격사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며, 자유업종인 법무사들에게 지나

민사집행대리 업무 분야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다. 경매사건의 경우, 경락 이후의 인도집행 절차 등 후속 조치와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사건에서 제3채무자에게 실제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주는 후속 업무, 그 외 동산집행 위임 대리 등 법률생활의 민원사각 지대 업무도 법무사의 통상업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친 규제를 하는 것임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4. 전문성 제고와 차별적 업무 영역의 개척

법무사는 변호사와 기능적으로 구별되고, 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자격사이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어 변리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제외하면(변호사와 법무사는 기능적으로 그 업무가 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인접 자격사들이 취급하는 분야를 제외한 실제 사회생활의 업무 모두에 관여되는 자격사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와 중첩적 기능을 가진(법무사의 업무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원·검찰의 신청 업무에만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제 법무사제도는 성년을 지나 노년의 역사를 가진 지난 110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고유의 전문성과 개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민들의 법률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자격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법률생활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법무사 업무의 고유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에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민사집행대리 업무

이 분야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다. 즉, 경매사건의 경우 경락 이후에 일어나는 인도집행 절차 등 후속 조치와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사건에서 제3채무자에게 실제적으로 채권추

심을 해주는 후속 업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산집행을 위임 받아 대리하는 등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생활의 민원 사각지대 업무도 법무사의 집행대리 업무로 편입시켜 국민 일반의 불편을 덜고, 법무사의 통상업무로 체계화 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각종 신청 사건의 원스톱 업무와 컨설팅 병행

농지매매 등기신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법무사는 매매등기신청은 대리하지만 대개는 증명 절차를 당사자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종래의 업무형태였다. 하지만 이제는 원스톱 민원업무와 같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리하는 원스톱 업무로 바꾸어 위임인의 불편을 덜고 법무사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의 설립등기를 수임하면서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거나 상업법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각종 용자제도 및 지원제도의 컨설팅,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각종 금융관련 업무의 대행 등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도 법무사 업무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개인 법무사의 능력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업계 전반의 활용을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관련 정보 및 업무처리 방법들을 숙지시키는 회원 연수교육 등 제도적인 선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채권추심과 채무자 재산조사 업무

이 역시 법무사 업무에 편입시키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회사도 있지만, 변호사 개인사무실이 있으면서 법무법인이 있듯이 법무사의 생활법률사무와 밀접한 관련성과 친화성이 있는 채권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조사 등의 업무를 법무사 업무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신용정보회사와 법무사 중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관세사가 있지만,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관세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관세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4) 경매입찰대리의 법무사 지위 개선

처음 예상과 달리 경매입찰 대리제도는 점점 장식용으로 전락하는 추세다. 지금은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시장을 맡아 국민들이 법무사를 통한 제도 활용 효과는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사를 경·공매 절차에 있어 현행법상의 경매 입찰 대리인의 지위에서 부동산의 일반 경매인의 지위로 상승시키고,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에서 행하는 경·공매 절차의 물건 등의 확인을 위한 '일반적 열람·등사 신청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그 제도적 뒷받침으로 법무사의 경·공매 입찰시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공·경매 입찰 대리시 보증금 사후 납부제도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법무사 위임시 편의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5) 법무부 국적 업무의 취급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가 법무성의 국적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하여 국적 업무를 법무사의 고유 업무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6) 등록업무의 복구

「법무사법」상 '등록' 업무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이나, 이 역시 법률상의 장식용으로 머물고 있다. 등록 업무는 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공장등록 등 여

러 기관에 다양하게 산재된 관계로 당연한 권한에도 그 간 사장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등록업무를 조사, 개발하여 그 업무 내용을 회원들에게 숙지시키고 특화된 대국민 서비스로서 복구하면 좋을 것이다(「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의 삭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함).

5. '영어 과목' 추가 등 법무사 시험 제도의 개선

현행 법무사 자격시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은 물론이고,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 영어과목이 들어 있지 않은 시험은 거의 없다. 그러나 법무사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제외되어 있다. 사법시험과의 대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연유한 결과이겠으나, 국제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외국어는 전문직의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 과목인 만큼 법무사 시험에도 반드시 영어 과목이 들어가야 한다.

다만, 영어 과목의 추가로 인해 다른 시험 과목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 과목의 대체로 인해 줄어드는 과목은 법무사협회의 실무연수 과목으로 조정하여 현실적인 연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감정평가사와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당초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지금은 모두 실시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 및 행정고시(검찰직 5급) 합격자도 법원 등에 5년 이상 근무하고도 법무사 2차 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영어과목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2차 실무시험을 '등기서류 작성, 공탁서류 작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자격사 시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실무시험'이라고만 표시하는데 유독 법무사 시험만 '00서류 작성'으로 공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대서사 시험 정도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자칫 현업 법무사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현재 중복적인 기능으로 비능률적·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회장단회의와 이사회 기능도 상호 분리하여, 이사회가 각종 의안의 의결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업계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국회의원, 각 사회단체 임원, 법조계 인사 등을 망라한 범조직적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깊이 연구 검토해야 한다.



Ⅲ. 법무사협회 내부제도 개선방안

1. 협회 및 지방회의 조직 등 구조 개선

1) 기능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회장회·이사의 분리

지금의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조직 등을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혁신하여 급변하는 업계 내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협회는 기능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장 중심의 회무에서 분과위원회 중심의 회무로 바뀌어야 하며, 등기·집행·신청·가족등록·공탁 등 법무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두어 모름지기 법무사업계의 중심기구 내지는 선도적 기구로서 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단, 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제도발전 연구에 중점을 두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중복적인 기능으로 비능률적·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회장단회의와 이사회 기능도 상호 분리하여, 회장회의는 중앙회와 지방회의 상호 협조 내지는 조직 운영상의 조정·통합의 기능만 부여하고, 이사회는 본래의 기능인 각종 의안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업계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국회의원, 각 사회단체 임원, 법원 및 검찰 관계자, 행정부 인사, 법학계 인사, 대학교수 등을 망라한 범조직적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깊이 연구 검토해야 한다.

2) 공보이사제 도입과 감사제도의 개선

변호사나 변리사단체 등에서는 협회의 공식직장 등을 공보이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공보이사

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가 2대 단체인 법무사협회에 공보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보직을 담당하는 상설이사제도로의 변경이나 상근부협회장이 공보책임자를 겸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대한법무사협회 감사제도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현재 회계업무가 단식부기로 처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복식부기제도로 바꾸어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고 수익사업(임대사업 등)의 ‘손익계산서’ 등 기본적 회계서류가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리부에 회계 전문인력을 확보, 그 기능을 높여야 한다.

각 지방회도 분야별로 연구회 모임을 제도적으로 설치하여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역량을 축적하는 진일보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협회 교육·연수기능의 개선

현재 협회의 교육기능은 물적·인적 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 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무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효과적인 연수와 교육이 어려운 처지다.

법무사 등록 전 연수는 종래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체계에서 실무중심적인 과목으로 대체하고, 법무사들에게 필요한 다각도의 교양과정(부동산 세법 등)을 편성하여 이를 실무교육에 연계시켜야 한다(현재 법무사 후보자들의 불만을 참고해야 함).

또한, 교육 방법도 교육의 질 향상과 디지털 교육의



법무사업계의 윤리강령은 처음 제정할 당시에 지금은 사회상황도 달라졌고, 법무사 배출제도의 수준과 법무사 개인의 자질 또한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무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사회 봉사하고 고도의 윤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윤리강령을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무상교육에서 최소한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제도로 바꾸고, 그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협회 내 출석교육 1개월, 사이버교육 3개월(온라인 시험도 가능), 법무사 사무실 수습 1개월, 법원·검찰 실무교육 2개월 등으로 구성하여 법무사의 자질과 업무처리의 기본적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의 직접교육(면대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 대학과 상호연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제한 반복이 가능한 디지털 전문 교육체계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 각종 강사진도 법관·검사·대학교수 등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을 초빙하여 연수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외연을 확대 구축하는 방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연수방안의 하나로서 심포지엄과 워크숍의 주기적 개최 또한 절실하다.

3. 윤리강령의 현실적 개선

- 법무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윤리를 존중한다.
- 법무사는 법령과 규율을 준수하고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한다.
- 법무사는 협조와 성실 공정한 업무수행으로써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법무사는 공신성을 존중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법무사는 자아의 인격수련과 협동의 정신을 길러 국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한다.

현재 법무사윤리강령이다. 위 강령 중 첫 번째 항목은 한글 전용시대에 맞게 ‘법무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윤리를 존중한다’로 고치는 것이 문맥에 맞다. 또, 법무

사가 법령과 규율을 준수함은 너무도 당연하며, 성실 공정한 업무 수행, 공신성 존중과 명예와 품위를 보전해야 하는 것 또한 기초상식이다. 더불어 법무사가 자아의 인격연마와 협동의 정신을 길러 국가사회복지에 헌신한다는 것도 참 좋은 강령이지만, 고등교육을 받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들을 마치 사상적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 지금은 사회상황도 달라졌고, 법무사 배출제도의 수준과 법무사 개인의 자질 또한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무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사회 봉사와 고도의 윤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윤리강령을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이다.

4. 협회 내 ‘신용조합’의 창설

현재 협회 내에는 다양한 용도로 축적된 자금이 있다. 현재는 이것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 자금으로 ‘신용조합’을 창설하여 회원들에게 금융 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 단체의 신용사업을 참고할 만하다.

5. 법무사단체의 대외 봉사와 홍보기능의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영속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국가·사회적으로 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에 헌신하지 않는 기업은 그 영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변화된 기업문화이고 사회 현실이다. 우리 법무사단체도 협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폭넓

게 실천해야 한다.

또한, 종래 협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에서 대국민 홍보 차원의 기획홍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제는 법무사의 역할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대국민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홍보하는 제도적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사들이 지역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사들의 지역적 위상으로 볼 때, 대외적 활동 영역이 협소하게 되는 대표적

사례인 만큼 앞으로 협회 또는 지방회에서 법무사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와 적극 독려가 필요하다.

IV.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법무사법의 개선과 협회 내부의 개혁 방안을 종합하여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현행 법무사법의 업무 규정 개정안을 도표로 조명해 보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법무**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비고
제2조[업무]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제2조[직무] ①법무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업무]를 [직무]로 변경하고, 소액소송 대리에 맞게 본문을 조정하면서 '행위' 개념을 도입함. ※ 변호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에서 '업무'가 아닌 '직무' 개념을 쓰고 있으며, 당초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에서는 '업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위와 같이 변경함.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1. 법원·검찰청·법무부에 신청·청구 또는 제출(위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업무 및 다른 기관의 등록업무를 포함한다) 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2.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3.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사건과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4. 소액사건 소송대리(구체적 내용 생략) 5.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관한 신청·청구 등의 대리(구체적 내용 생략) 6. 민사강제집행 사건의 집행대리 7. 채권추심 및 채무자의 재산조사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 8.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상담 및 자문 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및 행위(지방세 납부대리 등을 포함한다)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된 업무	1. 업무처리 기관에 법무부 등을 추가함. 2. 경·공매 입찰 등의 대리에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추가하고(사전에 정보취득 가능하게 함), 본조 자구 조정함. 3. 소액사건 소송대리 및 사법보좌관 업무는 장래 입법시 가능함. 4. 집행대리 업무를 추가함. 5. 신용정보 업무를 추가함. 6. 기타 부대 관련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지방세 납부대리의 근거 마련함. 7. 상담 규정을 추가함. 8.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정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조항을 둠.
② 법무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② 제3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 다른 법률로 법무사법을 개폐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종전의 ②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경매절차의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해 대법원 시행규칙 조항을 둠.